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3. 4. 3.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5. 1. 개정 2015. 2. 3.
전부개정 2019.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의 의무

제2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추천위원은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은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 · 경력 ·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은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신청 · 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 · 의결을 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천위원은 위원에 취임한 때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등

제3조(투표반영비율 및 득표율 계산) ① 선정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한 투표반영비율은 구성원(교수, 직원, 조교, 학생) 단체의 합의하에 총장이 결정한다.

② 투표반영비율에 따른 후보자의 득표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교원선거인은 'A', 직원선거인은 'B', 조교선거인은 'C', 학생선거인은 'D'라

하고, 투표반영비율(%)은 교원선거인은 'xa', 직원선거인은 'xb', 조교선거인은 'xc', 학생선거인은 'xd'라 한다.

2. 임의의 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교원선거인 'a', 직원선거인 'b', 조교선거인 'c', 학생선거인 'd'라 하면, 해당 후보자의 총 득표율 'G'는 G = [{ (a/A) × xa } + {(b/B)×xb} + { (c/C) × xc } + { (d/D) × xd }] 이다. 단, 후보자별 유효득표율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림)하여 큰 순서부터 잔여분을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반영비율은 결선투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제4장 선거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 등

제4조(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① 선정규정 제20조제1항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후보자의 인영은 관할선관위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선정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의 추천서 교부를 요청하되([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 한다.

③ 선정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재직증명서)·제15조(보직사퇴서)는 우리 대학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선정규정 제14조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목록 및 그 서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위원회제출 서류) 선정규정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 직무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
3.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4. 공약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5. 후보자 소견서([별지 제8호] 서식)
6. 대학발전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선거인명부)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 및 조교의 선거인명부는 교무과, 학생선거인 명부는 학생지원과, 직원선거인 명부는 총무과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전 9일까지 추천위원회에서 작성·확정한다.

③ 선정규정 제19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 확정 · 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2-1호],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제7조(선거공보·선거벽보의 제출·정정) 선정규정 제24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확인은 [별지 제14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선정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5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요청 및 선정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요청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서 등) ① 선정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선정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거공보, 선거정보,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선정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용후보자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9조(임용후보자 선정 공고 등) 선정규정 제38조에 따른 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20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임용후보자 선정의 무효 · 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21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0조(공개토론회) ① 선정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기관, 단체, 선거인은 임의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② 공개토론회의 주제와 질의사항, 사회자, 토론자, 그리고 진행 방식은 추천위원회가 정하여 토론회 1주일 전까지 후보자와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③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이 토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직원, 조교, 학생 등에게 토론 패널의 할당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론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보) ① 선정규정 제24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 · 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A4 크기 이내
2. 면수: 16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② 선거공보의 작성수량 · 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 ·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 전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 · 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검인일자 및 검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 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을 통보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5일 전까지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을 공지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의 소속기관 업무 우편함으로 송부한다. 단, 학생선거인의 경우에는 총학생회로 송부하고, 총학생회는 수령 후 지체없이 해당 학생선거인에게 전달한다.

⑥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등재순(교원, 직원, 조교, 학생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선정규정 제24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 및 필요 사항에 관해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

⑧ 선정규정 제24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선정규정 제24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 · 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영상 홍보물 등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 홍보물은 5분 이내이며, 총장후보자별 게시판 용량 범위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영상 홍보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⑤ 제출된 영상 홍보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⑥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영상 홍보물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선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① 총장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선정규정 제27조제2항의 선거홈페이지를 학내 정보통신망에 개설 · 운영한다.

② 선거홈페이지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총장이 협의하되, 다음 각 호의 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1. 선거관련 정보 제공: 관할선관위, 추천위원회, 총장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선거에 관한 법령 · 선정규정을 안내하는 기능
2. 후보자정보 제공: 선거 후보자의 직무기술서 및 경력 · 학력 · 연구실적 등에 관한 정보, 대학발전계획서, 선거공보를 게시하여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3. 후보자의 정책홍보: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글, 도화,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기능
4. 선거와 관련된 이의신청, 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능
5. 공개토론회의 실황중계 또는 그 녹화영상물을 게시하는 기능

③ 후보자가 선정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는 후보자의 주요경력과 업적, 총장관, 대학관, 대학발전방향 등에 대한 견해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설회 · 찬조연설 · 좌담회 · 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부분을 담을 수 없다.

④ 교원선거인이 선정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 관해서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각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선거홈페이지의 용량은 동일하게 한다.

제14조(선거벽보) ① 선정규정 제25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④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15조(소형인쇄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형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정해진 1부를 추천위원회에 배포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형인쇄물은 A4 크기 이내 (양면인쇄 가능) 4면(2매))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④ 소형인쇄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⑤ 제출된 소형인쇄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⑥ 소형인쇄물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형인쇄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⑦ 소형인쇄물의 배부는 대학업무 우편함 또는 대면 전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제16조(동순위자 중의 선정방법) 선정규정 제37조의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아 차순위 득표자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를 정한다.

1. 제1차투표(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에서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리 대학에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후보자(이하 “장기근속자”라 한다)를 제2순위 임용후보자로 한다.

2. 제1차투표(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과 제2차투표의 대상이 3인 이상인 경우 그 후보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제2차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를 임용후보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1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제2순위 임용후보자로 하고, 제1차투표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 중 장기근속자를 제2순위 임용후보자로 한다.

3. 제2차투표(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과 결선투표의 대상이 3인 이상인 경우 그 후보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임용후보자 2명이 정해지는 결선투표의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득표순위의 후보자들의 제2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제2차투표의 득표순위도 같은 때에는 제1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제1차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장기근속 순위에 따라 정한다.

4. 선정규정 제37조의 결선투표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이 제2차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의 제1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 2인 및 그 순위를 정하며, 제1차투표에서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장기근속순위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선정취소에 따른 재선정방법) ① 선정규정 제43조제2호에서 예정하는 사정(임용후보자 중 2순위 후보자가 선정무효 · 취소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제2순위의 임용후보자로 새로 선정한다.

1. 선정규정 제37조의 제1차투표(과반수득표자 1명과 차순위 득표자 1명이 정해진 경우)만 실시한 때에는 그 제3순위 득표자
2. 선정규정 제37조의 제2차 투표(과반수득표자가 없는 제1차투표의 다수득표자 3명 이상에 대한 제2차투표)까지 실시한 때에는 그 제2차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
3. 선정규정 제37조의 결선투표(과반수득표자가 없는 제2차투표자의 다수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대상자가 3명 이상이 된 때에는 그 결선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장기근속자를 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제7장 보 칙

제18조(선거 비용 부담)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선거 홍보물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며 추천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 검증기간은 2007년 2월 이후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추천위원회는 이 시행세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용후보자 선거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별지 제1호]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부(통).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관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후보자(예정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위 사람을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학과명	서 명

※ 1. 순천대학교 교원선거인 중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자 1명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 제출하여야 함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1호]

후보자 추천서 교부신청서

1. 선 거 명

2. 입후보예정자

가. 성 명 (한 자)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전화번호)

3. 교부신청 매수 매

년 월 일 실시하는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추천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후보예정자) ㊞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직 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 ) -	자 택 : ( ) -	휴대전화 : - -
E - mail			

2. 학력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 . . ~ . . .				

3. 주요 경력 (추가 별지 사용 가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및 상훈(증빙서류 첨부) 등

병역 사항	병역구분	필/면제	구 분	종 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복무기간	~	상훈 및 포상			
	군 별					
	계 급					
	병 과					
징계	처분일자	징계종류	성 관련 비위사실	예) *있음 또는 없음*		
			음주운전 여부	예) *없음*(후보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5. 연구업적 등 (2007년 2월 1일 이후)

항 목	논문	저서	특 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및 저서(추가 별지 사용 가능,)

주)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자세한 사항은 순천

대학교 교원업적평가방법 등에 따른다.

연번	구분	이름	공저자수	제 목	게재일자(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권,호,쪽)

② 등록특허(2개 이상 국가에서 등록된 것은 1개만)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③ 기타 각종실적

연 번	이 름	실적내용	일 자	국가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직 무 기 술 서

※ 우리대학 부임 이후 수행한 학생교육과 책임자로서 수행한 연구활동, 산학협력 내용 그리고 주요 보직 수행 경험이 있다면, 보직 수행기간 동안 조직이나 학교발전에 영향을 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학외 후보자의 경우는 대학졸업 이후 수행한 직무 중 본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반영되어 조직발전에 영향을 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제6호]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정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선거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음해 등 선량한 풍습, 그 밖의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등록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4.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경우,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의 최종적인 총장 임용을 존중한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인)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대학 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인)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후 보 자 소 견 서

※ 지원 배경,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별지 제9호]

대 학 발 전 계 획 서

※ 총장으로서의 자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대학운영방침 및 경영계획, 조직 및 인사관리, 공직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15매 이내)

[별지 제10호]

<표 지>

년 월 일 실시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 거 인 명 부(교원 · 직원 · 조교 · 학생)

작 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년 월 일

순천대학(원)(○책 중 ○권)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내 지>

등재번호 ①	주 소 (소 속) ②	성 별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투표용지수령인⑥		비 고 ⑦
					제1차투표	결선투표	

주: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적습니다.

② "주소(소속)"칸에는 순천대학교의 주소를 적고 괄호안에 그 소속을 적습니다.

③·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⑥ "투표용지수령인"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거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⑦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4. 장당 15명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⑴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⑵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⑶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주: ⑶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별지 제11호]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 고

주: 1. 구성원수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별지 제12호]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 구성원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 한	④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 정 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 한 선거인수 비율(%)	비고
		감	증	감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제12-1호]

선거인명부 수정 상황

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	성 명	수 정 내 용		수정사유	비 고
		수 정 전	수 정 후		

주: 1. "수정사유"칸은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3호]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등 재 번 호	성 명	오기사항 등	비 고

주: "오기사항 등"칸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에 퇴직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별지 제14호]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기호		성명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 공보확인 내용

기재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추천위원회 확인
성명, 기호 및 사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대학관 및 총장관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			

확인 결과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15호]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제출서

1. 선 거 명: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 출 내 역

구 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비 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후 보 자 ㊞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16호]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table>
<tr><td colspan="2">선 거 명</td><td colspan="4">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td></tr>
<tr><td rowspan="3">후보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기 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able>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입 후 보 자 ㊞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이 신청서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별지 제17호]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붙 임: 증명서류 부.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칸에는 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

선거공보 · 후보자 정보 · 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대상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후보자정보)·(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훈 · 연구실적등·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붙 임: 증빙자료 부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 · 연구실적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대상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신청사유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붙 임: 증빙자료 부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 · 연구실적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

공고 제20 - 호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조에 의거하여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순위				
2순위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순천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일 이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21호]

공고 제20 - 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 · 취소) 공고

순천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무효)(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기호	성 명	생년월일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